

〈자료〉

#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

전호에 게재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76년 2월24일 조례 1017호로 제정된 개정조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2 호를 삭제하고 동조항 제 3 호 내지 제 8 호를 제 1 호 내지 제 6 호로 한다.

제10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 1 항의 공사신청자는 급수를 받고 자하는 실수요자이어야 한다.

제 11 조 제 3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준공검사 수수료 1 건에 대하여
  - 10만원 이하 1,500원
  - 50만원 이하 2,000원
  - 50만원 초과 3,000원

제12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시장은 시공업허가에 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.
  1. 점정시험 수수료 1 건당 2,000원
  2.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 건당 5,000원
  3. 시공업 허가증 교부수수료(신규) 1 건당 5,000원
  - 시공업 허가증 교부수수료(갱신) 1 건당 2,000원
  4. 시공업자 영업장소 변경수수료 1 건당 2,000원

제13조 제 3 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중 “가입금”을 “시설분담금”으로 하고 동 조 제 1 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 2 항에“이 때의 호별산정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”를 추가한다.

제23조 제 3 항을 삭제한다.

제28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 2.(가압료징수) ① 시장은 특수 가압 시설의 운영설비를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가압료는 1m<sup>3</sup> 당 10원으로 한다.

제30조 3 항을 삭제한다.

제34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 다만,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6조 제 1 항중 “공사용 기타”를 삭제한다.

제41조 제 3 항중 “가입금”을 “시설분담금”으로 하고, 동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 1 항에 의한 징수를 권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0조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량에 따라 산정한다.

제47조를 제48조로 하고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(포상금 지급)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징수 금액을 5/100
2.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5/100
3.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 금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 건당 3 만원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.

별표 제 1 호, 제 2 호, 및 별표 제 3 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제 2 호 및 별표 제 3 호에 의한 급수사용료, 급수관 손료, 제 2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가압료는 1976년 3월부터 적용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공사 승인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설분담금은 종전의 금액으로 징수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징수한 가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본다.

(별표 제 1 호)

**시설분담금액표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신 설          | 개 조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내경 13 <sup>m</sup>    | 50,000원      | 개조시에는<br>신구 구경별<br>시설분담금<br>의 차액을 징<br>수한다. |
| " 20 <sup>m</sup>     | 140,000 "    |   |
| " 25 <sup>m</sup>     | 230,000 "    |   |
| " 40 <sup>m</sup>     | 590,000 "    |   |
| " 50 <sup>m</sup>     | 920,000 "    |   |
| " 75 <sup>m</sup>     | 1,980,000 "  |   |
| " 100 <sup>m</sup>    | 3,600,000 "  |   |
| " 150 <sup>m</sup>    | 8,090,000 "  |   |
| " 200 이상 <sup>m</sup> | 14,380,000 " |   |

※ 내경 구분은 양수기 구경을 기준으로 한다.

(별표 제 3 호)

**급수관 손료표**

| 구경별                | 요 금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내경 13 <sup>m</sup> | 1 전 1 개월 150 원 |
| " 20 "             | " " 300 "      |
| " 25 "             | " " 400 "      |
| " 40 "             | " " 600 "      |
| " 50 "             | " " 1,200 "    |
| " 75 "             | " " 2,400 "    |
| " 100 "            | " " 2,800 "    |
| " 150 "            | " " 4,000 "    |
| " 200 이상           | " " 5,600 "    |

※ 구경은 양수기 구경을 기준한다.

(별표 제 2 호)

**급수사용료 요율표**

| 용도    | 1전1개월 기본요금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초과사용료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기본수량 (m <sup>3</sup> )      | 기본요금 (원) | 사용구분 (m <sup>3</sup> ) | 1 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 |
| 제 1 종 | 30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550    | 31 이상                  | 145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2 종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200    | 21 "                   | 90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3 종 | 15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0      | 16~30                  | 35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31~50 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51~이상                  | 70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4 종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| 75,000   | 501 이상                 | 240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5 종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| 22,500   | 501 "                  | 55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6 종 | 사용수량 1m <sup>3</sup> 당 55원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7 종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| 5,000    | 101 이상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8 종 | 사용수량 1m <sup>3</sup> 당 110원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시설소화전의 기본요금은 월 500원

○ (1년분을 1회에 징수 할 수 있다) 으로서하고 연습사용료는 제 6 종의 요율에 의한다.

**水 道 <第 7 號>**

登録番號 第 1 - 892 號

登録日字 1974年 8月27日

發行所 社團法人 韓國上水道協會

서울 特別市 鍾路區 弼雲洞 261番地

電 話 44-5519

私書函 서울 光化門 郵遞局 565號

發行人 吳 石 煥

編 纂 韓國上水道協會編纂委員會

委員長 丁 奎 榮

主 幹 朴 亨 錫

1976年 4月 10日 印刷

1976年 4月 15日 發行

> 非 賣 品 <